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##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심 사 보 고 서

2008. 9. 25.

사회건설위원회

#### 1. 審 査 經 過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9월 11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9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08년 9월 23일) 상정 의결

#### 2. 提 案 說 明 的 要 旨 (제안 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)

##### 가. 제 정 이 유
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8조의 규정에 장기요양보험료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2조에 따른 보험료(이하 이 조에서 “건강보험료” 라 한다)와 통합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공단은 “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고, 건강보험료만 지원할 경우 급여대상자의 혼선이 우려되어 불가피 장기요양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 내용

- 제명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”로 개정
- 목적의 “국민건강보험료”를 “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”로 일부 개정(제1조)
- 정의에 “보험료라 함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2조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8조에 의하여 통합 징수하는 보험료를 말한다.” 신설(제2조 제3호)

## 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: 이남식)

-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 27일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징수하게 되어 우리 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금액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4. 審査結課 : 原案可決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62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8. 9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8조의 규정에 장기요양보험료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2조에 따른 보험료(이하 이 조에서 “건강보험료”라 한다)와 통합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. 라고 규정하고 있고, 건강보험료만 지원 할 경우 급여대상자의 혼선이 우려되어 불가피 장기요양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”로 개정
- 나. 목적의 “국민건강보험료”를 “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”로 일부개정(제1조)
- 다. 정의에 “보험료라 함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2조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8조에 의하여 통합 징수하는 보험료를 말한다.”신설(제2조 제3호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
제8조(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) 장기요양보험료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2조에 따른 보험료(이하 이 조에서 “건강보험료”라 한다)와 통합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.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타
  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“별첨”
  - (2) 입법예고(2008.07. 23 ~ 2008. 8. 12) 결과 “의견 없음”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국민건강보험료”를 “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”로 한다.

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보험료”라 함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2조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8조에 의하여 통합 징수하는 보험료를 말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</p>	<p>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</p>
<p>제 1 조 (목적)</p> <p>이 조례는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 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위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 당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인 자에게 <b>국민건강 보험료</b>(이하 “보험료”라 한다)를 지원함으 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 1 조 (목적)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 <b>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</b>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제 2 조 (정의)</p> <p>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</p> <p>1 ~ 2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	<p>제 2 조 (정의)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 ~ 2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3. “보험료”라 함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2 조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8조에 의하여 통합 징수하는 보험료를 말한다</b></p>